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촬영물반포등 및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의 법정형 상향〉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69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35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해 진

목 차

I. 제안경위 등(제2206969호)	1
II. 제안경위 등(제2207035호)	2
III. 검토의견	4
1. 각 개정안의 내용	4
2.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7
3. 촬영물반포등 및 촬영물이용협박·강요의 법정형 상향	13

I. 제안경위 등(제2206969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6.

다. 회 부 일 : 2024. 1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II. 제안경위 등(제2207035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7.

다. 회 부 일 : 2024.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촬영물 유포 시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써 범죄 태양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에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적용한 것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므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

III. 검토의견

1. 각 개정안의 내용

□ 제220696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제1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의
반포등 행위(이하 “촬영물반포등”)의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안 제14조제2항),

제220703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제2개정안”)은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하는 행위(이하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의 형량을 1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각각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임(안 제14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2206969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생략)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	② ----- ----- ----- ----- -----

현행	개정안
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u>1년 이상</u>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	----- ----- ----- ----- ----- ----- ----- ----- ----- <u>1년 이상 7년</u> <u>이하의 징역</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07035호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 ----- ----- ----- ----- ----- ----- ----- ----- <u>3년</u>----- -----. ② -----

현행	개정안
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u>3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생략)	----- ----- --<u>5년</u>----- -. ③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 절차상의 특례, 주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은 총 4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의미와 유형에 관한 내용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1~\$2)	총 칙	성폭력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장 (\$3~\$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개별적인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절차상의 특례 등
제3장 (\$42~\$49-2)	신상정보 등록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등록정보의 제출· 변경, 등록정보의 관리 등
제4장 (\$50~\$52)	벌 칙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를 정의함에 있어 그 개념요소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동법에 따르면, 음행매개 등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간음·성매매 등 목적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함.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유형 ＞

구 분	근거 법률	대상 범죄
제1항제1호	형법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공연음란
제1항제2호	형법	추행·간음·성매매 등 목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제1항제3호	형법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제1항제4호	형법	강도강간
제1항제5호	성폭력처벌법	특수강도강간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등
제2항	기타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제1항 각 호의 범죄

○ 이 중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반포등(제14조의2),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제14조의3) 등의 각 범죄¹⁾는 주로 디지털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외부에서는 범행을 발각하기가 어려우므로, 성폭력처벌법은 이들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분류하고, 수사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²⁾

-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반포등 또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등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등이 규정되어 있음.³⁾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 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며, 이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수사 등이 허용됨.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정형은 다음과 같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는 그 대상이 ‘촬영물 등’과 ‘편집물 등’으로 다를 뿐, 양 조의 각 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태양과 보호 법익 등이 유사하므로, 각 항의 범죄에 대한 범정형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 ⑦ (생략)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 ⑦ (생략)

<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

조	항	행위 태양	법정형
14	①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②	무단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등의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②	승낙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등의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③	영리의 목적으로 촬영물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4	④	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⑤	상습으로 ①~③	①~③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4-2	①	사람의 신체에 관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무단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2	②	무단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 등의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2	②	승낙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 등의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2	③	영리의 목적으로 편집물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4-2	④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2	⑤	상습으로 ①~③	①~③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4-3	①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4-3	②	①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4-3	③	상습으로 ①·②	①·②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다만,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따른 각 범죄의 법정형이 항상 동일하였던 것은 아니며, 현재와 같이 양 조의 각 항별 법정형이 동일하게 된 것은 2024년 10월 16일에 법률 제17086호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것임.

- 법률 제17086호로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에 제14조의2 각 항의 법정형 상향이 포함된 것은 제14조와 형량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었음.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법정형 비교 >

조	항	2018.12.18. ~ 2020.05.18.	2020.05.19. ~ 2020.06.24.	2020.06.25. ~ 2024.10.15.	2024.10.16. ~ 현재
14	①	5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14-2		-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14	②	5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14-2		-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14	③	7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14-2		-	-	7년 이하 징역	
14	④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14-2		-	-	-	
14	⑤	-	①~③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①~③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①~③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4-2		-	-	①~③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2020. 6. 25. 당시 기준 제14조의2제4항

주: 現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내용은 2020년 6월 25일에 신설되었고,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은 2024년 10월 16일에 신설되었음.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204300호 (2024. 9. 25.).

3. 촬영물반포등 및 촬영물이용협박·강요의 법정형 상향

가. 검토의견

□ 각 개정안에 따라 촬영물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등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할 것인지는 해당 범죄의 불법 수준에 대한 평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⁵⁾

다만, 한편으로 범죄의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지 아니하고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⁶⁾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함(형벌체계상에서의 균형성과 평등원칙).⁷⁾

5)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바85 등.

6)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368 등.

7)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0헌가42 등.

1) 제1개정안 제14조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관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각 항의 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및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며,⁸⁾ 상습범에 관한 공통규정인 제5항을 제외하면 제3항, 제1항·제2항, 제4항의 순서로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죄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제3항의 죄에 상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제2항·제3항의 죄와도 유사한 면이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보호법익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유 등이고,⁹⁾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행위 태양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과 유사함.¹⁰⁾

8)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바153: 이 사건 처벌조항(註: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이 포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9)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바46: 이 사건 법률조항(註: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 및 성착취를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10)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

-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므로,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음.¹¹⁾

○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죄는 건전한 성풍속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반포 등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과도 유사한 면이 있음.¹²⁾

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1)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舊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판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12)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개정안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정형이 같은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2제1항·제2항 중 제14조제2항의 법정형만 더 무겁게 변경되므로, 해당 규정의 법정형 상향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①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할 만큼 제14조제2항의 범죄의 불법성과 책임이 큰지, ② 유사한 범죄구성요건인 제14조 제2항과 제14조의2제2항의 법정형이 균형적인지, ③ 반포 등 행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각 조 제2항과 가중적 구성요건인 각 조 제3항에서 형벌의 위계가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제1개정안에 따른 유사 범죄 간 법정형 비교 >

구분		현 행		제1개정안
		제14조의2	제14조	제14조
①	행 위	신체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무단 편집·합성·가공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②	행 위	§14-2①의 편집물 등을 무단 반포등	§14①의 촬영물 등을 무단 반포등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③	행 위	영리 목적으로 §14-2①의 편집물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무단 반포등	영리 목적으로 §14①의 촬영물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무단 반포등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좌동	
④	행 위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변동 없음)	좌동	
⑤	행 위	상습으로 §14①~③	상습으로 §14①~③	
	법정형	①~③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좌동	

2) 제2개정안 제14조의3제1항·제2항(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관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제2항은 동법 제14조나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의 협박 또는 제324조의 강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함.¹³⁾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제2항은 청소년 정보보호법 제11조의2와 유사한데, 청소년정보보호법은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비하여 법정형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

청소년정보보호법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 그런데 제2개정안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와 청소년보호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용협박강요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등의 관점에서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2개정안에 따른 유사 범죄 간 법정형 비교 >

구분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현 행	제2개정안
		제11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3
①	행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협박	촬영물등 이용 협박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②	행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강요	촬영물등 이용 강요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나. 관계기관의 의견

1) 제1개정안 제14조제2항 관련

- 법원행정처는,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제14조제2항의 죄는 그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벌금형을 삭제하는 경우 법관의 양형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허위영상물 등에 관한 제14조의2제2항의 죄는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불법촬영물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정형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해당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제2개정안 제14조의3제1항·제2항 관련

- 법원행정처는, 법정형의 종류와 선택은 원칙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용협박·강요죄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